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73번길 52 양구문화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군의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보존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 이내
3. 감사 2인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나 군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당연직 임원과 선임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②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 ① 당연직 이사는 부군수,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군의 감사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임원으로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임명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④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 · 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몰래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임원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

제20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21조(사무부서)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직원의 채용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재단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과 재단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공무원 파견요청)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파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24조(설치) 문화, 예술, 축제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재단설립 당시 양구군에서 출연한 설립자본금
2.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단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④ 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수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 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탁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⑤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년 2월까지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시정을 명한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년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출석수당, 심사수당과 여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검사 등)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감사·조사를 할 수 있고,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재단의 결산보고 이전에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기금의 조성 등) ①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경영공시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경영실적 평가와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고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임원 및 임기) 최초 임명되는 임원은 [별표 2]와 같고, 임기는 재단의 법인등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당연직 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재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표 1】

기본재산목록

(제25조 관련)

기 본 재 산 목 록				
총 계	금300,000,000원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건 물	-	-	-	-
토 지	-	-	-	-
출연금 (현금)	양구군		300,000,000	양구군
소 계	-	-	300,000,000	-

※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 기본재산: 3억원 이상(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강원도 내부방침)

【별표 2】

창립 발기인 명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 소	주요약력	기명날인
조인묵 (이사장)				
전경일 (이사)				
김성빈 (이사)				
강치원 (이사)				
임태용 (이사)				
안광준 (이사)				
김홍주 (이사)				
박대근 (이사)				
김광진 (이사)				
박금배 (이사)				
김철수 (감사)				
오민수 (감사))				